

天 道 教 憲

布德	九十六年	一月	十七日	大會通過
布德	九十六年	十月	十五日	公布施行
布德	九十八年	十一月	二十日	修正公布
布德	九十八年	十二月	二十三日	改正施行
布德	一〇二年	四月	六日	改正公布
布德	一〇四年	四月	四日	修正公布
布德	一〇五年	十二月	二十二日	修正公布
布德	一〇八年	十二月	二十一日	修正公布
布德	一一三年	十二月	六日	修正公布
布德	一三四年	三月	二十九日	改正公布
布德	一三六年	四月	三日	改正公布
布德	一四二年	一月	十七日	誤記正定
布德	一四九年	五月	三十日	誤記正定

天道教憲

第一章 教 會

- 第一條 天道教는 한울님의 啓示로써 崔水雲大神師께서 創明한 人乃天을 宗旨로 한다.
- 第二條 天道教는 布德天下 廣濟蒼生 輔國安民 地上天國 建設을 目的으로 한다.
- 第三條 天道教會는 天道教를 信奉하는 敎人の 誠敬信으로써 護持한다.
- 第四條 天道教는 서울特別市에 中央總部 地方 및 海外에 敎區 또는 傳敎室을 置한다.

第二章 教 人

- 第五條 敎人은 吾心即汝心の 神啓下에 所定의 入敎式을 行한 人으로 한다.
- 第六條 敎人은 布德 및 五款(呪文 清水 侍口 誠米 祈禱)를 實行하여야 한다.
- 第七條 敎人の 身分은 敎憑으로써 此를 證하되 發給節次는 規程으로 定한다.
- 第八條 敎人은 選舉 被選舉權이 있다. 敎職의 選舉被選舉의 資格은 規程으로 定한다.
- 第九條 敎人은 教會의 指導와 保護를 均受할 權利가 있다.
- 第十條 敎人은 敎憲에 定한 바에 依하여 敎務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權利가 있다.
- 第十一條 敎人은 敎憲 및 諸規程에 定한 事項과 各議會의 決議事項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 第十二條 敎人으로써 義務를 履行치 않을 時는 別途規程에 定한 바에 依하여 敎人資格이 喪失된다.
- 第十三條 敎人으로서 敎會事業을 目的하고 結社를 行할 時는 中央總部의 承認을 要하며 指導監督을 받아야 한다.

第三章 淵 源

- 第十四條 淵源은 水雲大神師의 心法의 繼承을 龍潭淵源이라 한다.

- 第十五條 敎人은 傳敎 受敎 敎導에 依하여 淵源의 相從關係가 成立된다.
- 第十六條 受敎人은 傳敎人의 恩義를 永守不忘한다.
- 第十七條 傳敎人은 直接布德 또는 敎導에 의하여 道正 道訓 敎訓 信訓의 原職을 受任하며 資格은 規程으로 定한다.
- 第十八條 道正 道訓 敎訓 信訓 資格에 關하여 各其 所屬敎人 名單을 每定期大會前에 敎化觀에 修報하여 玄機室 및 宗務委員會 審査를 經하여 敎領이 此를 認准하며 該敎戶數의 增減이 生할 時는 그 資格이 變動된다.
- 第十九條 淵源에 紛糾가 生할 時는 中央總部에서 調停한다.
1. 淵源集團間에 紛糾가 生할 時는 中央總部에서 調停한다.
 2. 淵源集團內에 紛糾가 生할 時는 道正이 調停한다.

第四章 淵 源 會

- 第二十條 淵源會는 道正 道訓으로서 構成한다.
- 第二十一條 淵源會는 大神師의 心法을 體하여 敎化 方案의 審議 및 修道布德의 勳行 信仰統一 規模一致를 精勵한다.
- 第二十二條 淵源會는 議長 1人, 副議長 2人, 幹事 1人을 任되 正副議長은 淵源會에서 選舉하고 幹事は 議長이 選任하여 淵源會에 同意를 얻어야 하며 正副議長은 敎領 諮問에 應한다.
- 第二十三條 淵源會는 道學과 德行이 兼備한 敎人으로서 宗法師을 推戴하며 宣道師를 選舉한다.
- 第二十四條 淵源會는 每年 四月에 議長이 召集하여 淵源會의 運營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五章 大 會

- 第二十五條 大會는 敎會의 最高決議機關이 된다.
- 第二十六條 大會는 道正·道訓·宗議院議員·敎區長·比例代表로 構成하고 宗務委員은 大會에서 發言權을 가진다. 단, 布德 136年 大會 이전에 選出된 宣道師는 大會構成員으로 한다.
- 第二十七條 大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敎憲 및 儀節의 議定
 2. 敎領 監查院長 中央監查 宗議院議員 財團理事의 選舉
 3. 財政處分에 關한 事項

4. 各機關으로부터 提案된 事項 및 其他 重要な 事項

第二十八條 大會는 敎領이 指名한 宗務院長을 認准한다.

但, 大會休會中 宗務院長 補選認准은 淵源會와 宗議院合同會議에서 代行한다.

第二十九條 定期大會는 三年一次 四月에 開催하되 此를 敎領이 召集한다.

但, 左의 境遇에는 臨時大會를 召集할 수 있다.

1. 緊急 重大한 事實이 있을 時

2. 大會構成員中 三分之一 以上이 事由를 具하여 連署 要求할 時

第三十條 大會는 在籍過半數出席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出席員 過半數로서 決定한다.

第三十一條 大會의 重要事項과 敎職選舉에 關한 議決은 出席 三分之二의 數로 決定한다.

但, 二회에 屢(屢)하여 三分之二의 數에 未達할 時は 過半數로서 決定한다.

第六章 中央總部

第三十二條 中央總部는 下記 各機關으로 構成한다.

第一節 敎領司

第三十三條 敎領은 天道敎를 代表하며 敎會全般을 統理한다.

第三十四條 敎領은 敎憲의 定한 법에 依하여 敎人에게 褒賞을 行한다.

第三十五條 敎領은 大會 宗議院會議에 敎書를 發할 수 있으며 敎憲 儀節 規程을 公布한다.

第三十六條 敎領이 有故時는 宗務院長 宗議院議長 順으로 此를 代行하되 闕位時는 六個月 以內에 大會를 召集하여 敎領을 補選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 敎領司에는 典書 若干人을 置한다.

第三十八條 敎領司에 屬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二節 玄機司

第三十九條 玄機司는 宗法師 宣道師로 構成하고 常住宣道師 若干人을 置하되 그 委囑을 敎領이 宣道師中에서 한다.

第四十條 宗法師는 敎領의 諮問에 應하고 常住宣道師는 敎領의 指示에 依하여 淵源組織 修道煉性の 指導 敎理 研究 布德敎化에 關하여 創意發案한다.

第三節 宗務院

第四十一條 教會의 宗務行政은 宗務院에 속하며 宗務院長은 教會 全般的인 行政을 總括 調整 執行한다.

宗務院은 宗務委員 13人 以內로 構成한다.

宗務委員은 宗務院長의 提請으로 敎領이 任免한다.

第四十二條 宗務院長이 有故時에는 敎領이 指名하는 宗務委員이 此를 代行하며 闕位時는 三個月 以內에 補選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條 宗務院은 敎化 敎務 經理 等 各觀을 設하고 그 觀長은 宗務委員으로서 補한다.

第四十四條 各觀에는 次長 觀書를 두되 該觀長의 推薦에 依하여 宗務院長이 任免한다.

第四十五條 宗務院은 敎化事業 및 敎會行政全般에 關한 事項을 議決執行한다.

第四十六條 宗務院長은 宗務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宗務院 全般事項을 指揮 監督한다.

第四十七條 各觀長은 規程에 依한 分掌事務를 主管하며 次長 觀書는 觀長 指揮下에 分擔事務에 從事한다.

第四十八條 下記事項은 宗務委員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1. 教會의 基本的 事務計劃 및 施策에 關한 事項
2. 敎憲改正 및 諸規程에 關한 事項
3. 豫算 決算 財産에 關한 處理 및 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4. 原職 및 新設敎區 傳敎室 認許事項
5. 部門運動 및 附設機關에 關한 事項
6.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四十九條 前條中 部門運動 및 附設機關의 設置 및 運營은 規程으로서 定한다.

第五十條 宗務院事務分掌 및 處務에 關한 事項은 規程으로서 定한다.

第四節 宗議院

第五十一條 宗議院은 議員 四十九人 以內로 構成한다.

第五十二條 前條에 依한 宗議員은 大會에서 選舉한다.

第五十三條 宗議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一人 事務長 一人을 置하되 議長 副議長은 宗議院總會에서 選舉하고 事務長은 議長이 選任하여 宗議院總會에 同意를 得하

여야 한다.

第五十四條 宗議院은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案과 大會受任事項 各種 規程 및 各 機關提案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第五十五條 宗議院會議는 在籍過半數出席과 出席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第五十六條 宗議院의 定期總會는 每年 四月 十二月에 議長이 此를 召集한다.

但 下記의 境遇에는 臨時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1. 特殊事態로 因하여 宗議院 議決을 要할 時

第五十七條 宗議院運營에 대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五節 監 查 院

第五十八條 監查院은 院長 一人 監查 八人 以內로써 構成한다.

第五十九條 監查院은 敎領의 指示事項과 敎會 全般에 關한 規律을 掌理하며 財産 및 敎務行政監查 豫算執行 및 決算에 關한 監查, 附設機關의 會計監查 敎人 懲罰에 關한 事項을 決議執行한다.

第六十條 各種懲戒는 敎領의 裁可를 得하여야 한다.

第六十一條 監查院長은 監查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六十二條 監查院長이 闕位 또는 有故時에는 監查 互選으로 그 代行者를 定한다.

第六十三條 監查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서 行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六十四條 懲戒는 在籍員 二分의 一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하되 黜敎는 在籍員 三分의 二 以上の 贊成으로 의결한다.

第六十五條 監查院의 監查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六節 財 政

第六十六條 中央總部の 歲入은 敎人の 月誡米 年誡米 基本財産으로부터 生하는 收入과 特誡金 및 기타 歲入으로 한다.

第六十七條 中央總部の 歲入歲出은 會計年度마다 豫算을 編成하여 宗議院 會議의 決意를 得하여야 한다.

第六十八條 中央總部の 歲入歲出 決算案은 年度監查를 得하여 宗議院會議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六十九條 天道敎의 不動産은 財團法人 天道敎 維持財團으로 此를 守護한다.

第七十條 財團法人 天道敎 維持財團 理事는 宗務院長, 淵源會副議長, 宗議院議長·副議長 및 大會에서 選出된 四人으로 하고 監查는 監查院長으로 하여 財團理

事長은 財團理事 九名 中 敎領이 指名하여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任命한다.

第七十一條 中央總部 豫算은 經常臨時二重으로 하고 豫算外 財政은 特別會計로서 此를 經理한다.

第七十二條 中央總部の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 一日부터 同年 十二月 末口로 한다.

第七章 賞勳 및 懲戒

第七十三條 敎會에 功勞가 有한 人에게는 相應한 褒賞을 行한다.

第七十四條 褒賞은 法師 布德師 및 道號 堂號로 한다.

第七十五條 敎會의 戒律에 犯한 敎人에게는 監查規程에 依하여 黜敎 停權 免職 謹慎 等의 罰을 科한다.

第八章 地方敎會

第七十六條 市郡(서울特別市)區內에 一個敎區를 設置하되 特殊地域에는 數個敎區를 둘 수 있으며 이는 規程으로 定한다.

第七十七條 地方敎區 및 直接傳敎室의 組織 및 運營에 對하여는 規程으로 實施한다.

第七十八條 地方敎區 및 直接傳敎室은 所定의 申請에 依하여 宗務委員會의 決議로서 敎領이 此를 認准한다.

第九章 敎 職

第七十九條 敎職은 原職 住職 禮遇職 三種으로 한다.

1. 原職은 道正 道訓 敎訓 信訓으로 하며 此는 一切 無期職으로 한다.

2. 住職은 敎領, 淵源會 正·副議長 및 幹事, 宗務院長, 常住宣道師, 宗議院 正·副議長 및 事務長, 宗議院議員, 監查院長, 監查, 宗務委員, 敎區長 其他 任命職으로 하며 그 任期는 三年으로 하되 敎領의 任期는 三年 單任으로

한다.

但, 補缺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期로 한다.

3. 禮遇職은 宗法師 宣道師로 한다.

第十章 敎 憲 改 正

第八十條 敎憲의 改正案은 敎領 宗議院議員 過半數 以上 또는 大會 構成員 三分之一 以上の 發議로 提案한다.

第八十一條 提案된 敎憲改正案은 敎憲改正案이 提案된 날부터 三十日 以上 公示期間을 經하여 大會에서 議決하여야 하며 大會의 議決은 在籍三分之二 以上 出席과 出席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八十二條 敎憲改正이 議決되면 敎領은 此를 即時 公布하며 公布와 同時에 그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第八十三條 이 敎憲은 議決한 大會議長이 公布하며 公布와 同時에 그 效力을 發生한다. 但, 規程의 制定이 없이는 實施할 수 없는 事項으로서 緊急을 要하거나 또는 從來繼續하여 오던 事業은 宗務委員會 決議로서 敎領에 稟議하여 實施할 수 있다.

第八十四條 本 敎憲改正後 第一次 選舉任員의 任期는 布德百三五年 四月 五口로 滿了되고 第二十六條에 該當되는 宣道師의 大會參席權은 次期定期 大會부터 效力을 갖는다.

第八十五條 이 敎憲은 大會에서 議決된 直後 敎領이 公布한 날(布德 百三十六年 四月 三日)로부터 施行한다. 但, 敎憲施行上 필요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